

##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년 8월 11일

내 무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95. 7. 24

나. 제출자 : 달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 95. 7. 26

라. 상정 및 의결

○ 제3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임시회

· 제2차 내무위원회 상정 : 95. 8. 10

· 제2차 내무위원회 의결 : 95. 8. 10

### 2. 제안설명요지 (설명자 : 재무과장 김낙흠)

가. 제안사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 5. 16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안 제4조)

○ 조례 제37조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당초 및 변경계획은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도록 규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 공유림에 대한 관리계획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 부서와 협

의 하도록 함(안 제37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및 통보 규정을 신설함(안 제37조의2)
  -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 다른법령에 의해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한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신설함(안 제39조의3)

다.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9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백창기)

본조례는 95. 5. 16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공포 시행에 따라 내무부 준칙안을 준용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며

- 법령과 조례와 중복된 규정은 삭제하고,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항과,
- 전담부서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제출된 내용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신설된 제37조의 2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 행하는 사업 즉 도로, 하천부지에 대해 현재까지 재산총괄관리관에게 협의하지 않고 취득하였는지?
-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은 주로 도로 및 하천건설등이 있으며 이의 취득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재산총괄관리관과 협의없이 감정 평가하여 취득 하였음.
- ▶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때 총괄 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에 있는지?
- ▷ 공유재산의 매각승인관계를 동장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동장과 보건소장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한 것은 없으며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위임하고 위임된 재산을 매각시 재산관리관에 승인후 매각 토록 한 것임.
- ▶ 본 조례개정안 제39조의 3 신설 규정에 보면 동장에게 재산관리가 위임되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 본 개정안의 매각승인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 ▷ 현재까지는 공유재산관리를 위임한 것은 없지만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의 관리사무위임 규정에 의거 위임이 되었을 경우에 위임된 공유재산을 매각시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7조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의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p>제4조(중요재산) ①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건당 예정가격 2억 5천만원이상</li> <li>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li> </ol> <p>② 토지의 경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면적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p> <p>③ 중요재산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li> <li>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li> <li>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li> <li>4.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li> </ol>	<p>제4조(삭제)</p>

현행	개정 (안)
<p>5. 분할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동일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p> <p>6.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 받은 폐천부지 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 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삭제)</p> <p>③ (삭제)</p>

현행	개정 (안)
<p>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7조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p> <p>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신설) 제39조의3(공유재산 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